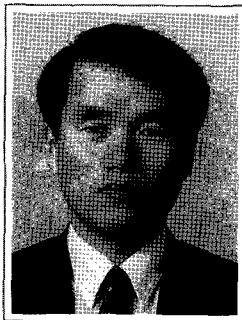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 제 · 개정 및 통합

성 기 억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사무관



과학기술부는 그 동안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기획, 과제 선정, 진도 관리, 성과 활용 등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관리됨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어온 사항들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 규정' 이라 한다)을 제정(대통령령 제17429호)·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통일된 규정을 일관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관리규정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그 동안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 부처별 특성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 원자력국에서는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이하 '원연사'라 한다) 관련 규정 중 원연사 처리 규

정의 경우 연구 수행 및 운영·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과기부 훈령 제95호)하고, 원연사 수행시 연구 개발 계획서의 산정·계상 기준으로 사용해온 원연사 산정 기준(과기부 지침)과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비의 사용·관리 및 집행 잔액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 지침(과기부 지침)을 통합하여 운영·관리 중 제기된 사항 등을 반영한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과기부 지침)을 확정·공포하며 2002년 3월 20일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제·개정 또는 통합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원연사 운영·관리·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보다 개선되고 향상된 연구 개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된 세부 규정별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설)

1. 목적 및 개념

○ 제정 목적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 용어 정의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기술료, 참여 기업, 출연금 등

2. 연구 기획 및 과제 선정

○ 사전 기획

-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기획, 중복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국제적 연계 협력 장려

○ 사업 공고

- 사업별 세부 기획 후 사업 추진 목적 및 선정 절차 등을 미리 공고

○ 과제 선정

-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고 중복성 등을 검토

○ 연구 개발 계획서 제출

- 연구 목표, 추진 전략 등 기술

3. 연구 과제 협약

○ 협약 체결

- 전문 기관과의 총괄 협약, 주관 연구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과의 개별 협약 또는 다년도 협약 등을 체결

○ 협약의 변경

-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필요시 또는 변경 요청시 협약 내용 변경

○ 협약의 해약

- 협약 변경 사유 발생시 현장 실태 조사 등 실시, 주관 기관 등에 귀책 사유 발생시 출연금 회수 및 제재 조치 부과

4. 연구 관리

○ 연구비 지급 · 관리

- 연구 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 연구 개발비, 간접비 비목

으로 구성

-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간접비는 과기부에서 기준을 마련

- 연구비는 신용 카드나 계좌 이체 사용시 증빙 자료 생략 가능

○ 연구비 사용 결과 처리

- 협약 종료 후 3개월 내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

- 회수 금액은 국고 또는 기금에 납입

○ 연구 개발 결과 보고 · 평가

- 연구 종료시 자체 평가 의견서, 연구 결과 활용 계획서 제출

- 연구 결과의 중간, 최종 평가시 공정성 유지 및 추적 평가 실시

- 평가시 후순위 과제는 연구 중단 및 제재(Free to Fail 인정)

- 연구 책임자, 연구 기관, 참여 기업에서 규정 위반시 연구 개발 참여 제한

5. 성과 활용

○ 연구 개발 결과물 소유

-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시설 · 시작품 등은 주관 기관에서 소유

○ 연구 결과 활용 촉진

- 실용화 과제는 연구 종료 후 연구 결과 실태를 평가

○ 기술료 징수, 사용

-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며, 승인을 받아 감면

- 전문 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는 예산 당국과 협의 후 사용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처리 규정 (개정)

- <표> 참조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비 산정 · 사용 및 정산 지침(통합 개정)

1. 총칙

- 회계 검증 업무는 주관 기관의 업무 집행 등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이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에 대한 정산 기관을 과기부 ·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이외에 주관 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연구 개발 사업비 산정

- 연구 개발 수행 부처 또는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공동 출연 · 지원 당사자 간 협의로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신설

- 연구비 계상은 인건비, 직접비, 위탁 연구 개발비, 간접비 비목으로 계상

- 직접비에 연구 홍보비 세목 신설

- 인건비는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는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으며, 인건비가 기획보된 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 과제 당 30% 이내의 참여율 계



〈표〉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처리 규정(개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1. 주관 연구 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의 장 및 주관 연구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동 ○ 공동 연구 관련사항 삭제
2. 연도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연구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공고 또는 관련 기관에 계획 공고 등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동 ○ 사업 공고 또는 관련 기관 통보시 포함 시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 · 평가 절차 • 평가 기준 등
3. 과제의 심의 · 평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조정관 또는 전문 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과제 계획서를 심의 ·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동 ○ 과제 선정시 외국과의 공동 연구 과제, 중소 기업 참여 과제 등은 우대
4. 과제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 과제는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 과제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수행이 필요한 과제는 10년 내에 계속 과제로 선정
5. 기업 참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출자의 범위와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인력, 연구 기자재, 연구 시설, 시약 및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출자의 범위와 산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직접 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 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6.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의 장은 협동 연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의 장은 총괄 협약 체결 후 1월 이내에 협동 연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미체결시 해약 가능
7. 협약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인건비, 직접 경비 20% 이상 증액시 • 위탁 연구비 20% 이상 증 · 감액시 • 위탁 연구 개발비를 총연구비의 50% 초과 증액 또는 취소시 ○ 증액 변경이 불가능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에서 지급되는 연구 관리비 • 기관 공통 관리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또는 위탁 연구 개발비를 당초 대비 20% 이상 증액 • 위탁 연구 개발비를 당해 연구 개발 사업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 초과시
8. 협약의 해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 등의 귀책 사유로 협약 해약시 연구비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 등의 귀책 사유로 협약 해약시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
9. 연구 개발비의 계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통 관리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인건비 • 기술 개발 준비금 • 연구 수행 지원 경비 ○ 개별 관리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인건비 • 직접 경비(여비, 국제 협력 연구비, 기술 정보 활동비, 지적 재산권 처리비,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 처리비, 시작품 등 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 연구 관리비(인센티브, 하위 과제 관리비) • 위탁 연구 개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공통 관리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 간접비(간접 경비, 연구 개발 준비금, 산업 재산권 출원 · 등록비) ○ 개발 관리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비(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 시작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 정보 활동비, 연구 활동비 (과제 관리비, 연구활동 진흥비), 연구 흥보비) • 위탁 연구 개발비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10. 연구 개발비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설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연구 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 카드나 계좌 이체 형태로 사용하며, 카드 사용 불능시 현금 사용
11.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은 연구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시 6종의 서류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은 연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시 2종의 서류 첨부
12. 연구 개발비 회수 및 재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한 부당 집행액 등을 연구 개발에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한 집행 잔액, 부당 집행액 중 정부 출연금은 국고에 납입하고, 기금은 연구 개발에 재투자
13. 연구 개발 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연차 실적 계획서 등을 별도 지침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연차 실적 계획서 또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 ○ 미흡 과제는 현장 평가 실시, 의미 있는 성과 또는 수행 과정 양호시 제재 조치 면제
14. 연구 개발 성과 활용 및 기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의 장이 기술 실시를 할 경우 협약 후 15일 이내에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기업 부설 연구소가 주관 기관인 경우 기업 대표 명의의 연구 개발 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 계획서 제출로 기술 실시 계약에 갈음 ○ 실용화 과제의 경우 개발 종료 후 5년 이내에 연구 결과 활용 실태 평가
15. 기술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는 당해 제품 매출액 발생시부터 6년 이내에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는 기술 실시 계약에 따라 6년 이내에 징수
16. 기술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의 장 또는 전문 기관의 장은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감면
17. 기술료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은 정부 출연금의 50% 이상을 전문 기관에 납부 ○ 정부 출연금 초과분은 주관 기관 내규에 따라 사용 ○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 이상을 다음 용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30% 이상) • 원자력 기초 연구를 위한 재투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기관이 비영리 법인인 경우 정부 출연금의 30% 이상을, 영리 법인인 경우 정부 출연금의 50% 이상을 전문 기관에 납부 ○ 전문 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는 연구 개발 재투자 등에 사용 ○ 주관 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는 기관 내규에 따라 사용 ○ 정부 출연금 상당액을 다음 용도에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50% 이상 • 연구 개발 재투자에 30% 이상 • 기관 운영 경비 10% 이내 • 기타 산업 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18. 위반 사항의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개인에 대하여 9개 사항 위반시 원연사에 3년 이내의 참여 제한, 연구 수행 지원 경비 조정 등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책임자, 연구 기관 등에 대해 6개 사항 위반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2년 이내 참여 제한 ○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타부처에서도 참여 제한 가능



상

○ 위탁 연구 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는 항목에는 직접비 중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 활동비로 하고 간접비 중 연구 개발 준비금, 산업 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규정

○ 간접비 중 간접 경비 및 산업 재산권 출원·등록비를 구체적으로 규정

-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간접 경비는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며, 대학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 관리 등급 평가 및 간접비 산정을, 민간 연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7% 이내를, 또한 국·공립 연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3% 이내를 각각 적용하되 현물 투자분은 제외

-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의 경우 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인정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실적을 보고

○ 기업 참여시 정부의 연구 개발비 지원 기준 등 규정

- 중소 기업에는 총연구 개발비의 75% 이내를 지원하고, 참여 중소 기업이 연구 결과물의 수요 업체인 경우 현금을 전액 현물로 부담

- 대기업이 연구 개발 참여시 부담 금액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외부 인건비에 한하며, 영리 법인이

관세·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시 제외

3. 연구 개발 사업비 관리·사용

○ 주관 기관은 연구 개발비 청구 사항을 연구비 종합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연구 개발비를 지급받고 연구 관리 카드로 연구비를 집행

○ 직접비 중 연구 활동비·간접비 전용을 제한

4. 연구 개발 사업비 정산

○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에 대한 정산 서류 검토 기관 규정

- 과기부는 연구 기획 평가 사업, 정책 연구 사업

- 주관 기관은 주관 기관 수행 과제, 협동·위탁 과제

- 그 외의 사업은 평가원

○ 연구 개발비 사용 실적 정산시 연구 기간 중 발생된 이자로 연구 과제화한 경우 과제의 인건비·간접비·연구 활동비에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하며, 연구 기간 종료 후 집행한 최종 보고서 인쇄비 및 발송비는 인정

○ 주관 기관의 장은 수행 과제, 협동 과제, 위탁 과제의 정산을 연구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행

○ 정밀 정산 과제 선정에 적용하는 기준을 7개에서 사용 실적 미제출 과제 등 4개로 간소화하고 세부 비목별 내역서, 증빙 서류 등을 필요

한 경우 제출토록 한정

○ 간접비 중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음

○ 집행 잔액 반납 통보 후 3개월 이상 반납 지연시 평가원은 채권 추심 등 집행 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행 잔액 회수 불능 시 종료 방안 마련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며

금번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 제·개정 및 통합 작업에서는 연구 개발 사업의 운영·관리·수행 중 제기된 사항과 공동 관리 규정의 내용, 수행 기관의 의견 등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수 차례의 과정을 거쳤다.

동 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보다 새롭고 원숙한 내용으로 모양새를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분들의 조언과 관심이 연구 개발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 기술 개발의 초석이 되는 지름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하며 후원·감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기대한다. ☺